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75 제출연월일: 2024. 11. 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 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 항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"원본"을 "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81조의10제6항 중 "원본"을 "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근거과세) ① ~ ③ (생	제16조(근거과세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	4
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	
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	
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	
또는 초본이 <u>원본</u> 과 일치함을	<u>원본(「전자문서</u>
확인하여야 한다.	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
	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
	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
	<u> 문서를 포함한다)</u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81조의10(장부등의 보관 금지)	제81조의10(장부등의 보관 금지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	6
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	
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	
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, 그 사	
본이 <u>원본</u> 과 다름없다는 사실	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
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	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
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.	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
	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
	를 포함한다)
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